주요 노동동향

경제 및 고용 동향

- ◆ 2011년 9월 생산 전년동월대비 4.6% 증가
- 2011년 9월 생산은 건설업에서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나 광공업, 서비스업, 공공행정의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4.6% 증가함.
 - 광공업 생산은 영상음향통신(-12.6%), 인쇄 및 기록매체(-18.0%) 등은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및 부품(15.5%), 자동차(15.2%) 등의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6.8% 증가함.
 - 서비스업 생산은 부동산・임대(-3.5%)에서 감소하였으나 금융・보험(8.0%), 도매・소매(2.4%),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5.7%), 운수(4.0%) 등이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3.8% 증가함.
- 2011년 9월 소비는 전년동월대비 2.8% 증가한 반면 투자는 전년동월대비 4.2% 감소함.
 - 소비재판매액지수는 승용차 등 내구재(6.4%), 의복, 오락・취미 등 준내구재(4.2%), 차량연료 등 비내구 재(1.3%)의 판매가 모두 늘어 전년동월대비 2.8% 증가함.
 - 설비투자는 전기 및 전자기기 등은 증가하였으나 일반 기계류, 자동차 등이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4.2% 감소함.
 - 건설기성(경상)은 비주거용 건축, 공공 및 민자 부문의 실적호조로 전년동월대비 4.2% 증가하였고, 건설수주(경상)는 공공부문에서는 신규주택 발주 가증가하였으나 민간부문에서는 주택, 기계설치 등의발주가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5.0% 감소함.

- 현재의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0.1로 전월대비 0.8%p 하락 하였고,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전월대비 0.4%p 하락함.
- ◈ 2011년 3/4분기 전 산업 생산 전년동기대비 4.1% 증가
- 3/4분기 광공업,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5.1%, 4.1% 증가하였고, 소비판 매는 4.4% 증가한 반면 설비투자는 전년동기대비 1.3% 감소함.
- ◆ 2011년 10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3.9% 상승(생활물가지수 3.2% 상승)
- 2011년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22.4(2005=100)로 나타나 전월대비 0.2% 하락하였고, 전년동월대비 3.9% 상승함.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전년동월대비 통신, 식료품·비주류음료, 의복·신발, 교양·오락 부문은 하락한 반면 주거 및 수도·광열, 교통, 교육 등의 부문에서는 상승함.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2009				2010						2011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9월	1/4	2/4	3/4p	9월p
	광공업 생산	-15.7	-6.1	4.3	16.2	-0.8	25.8	19.5	10.9	11.7	16.2	2.9	10.6	7.2	5.1	6.8(1.1)
	제조업 생산	-16.5	-6.6	4.4	16.8	-0.9	26.8	20.2	11.2	11.9	16.7	2.8	10.9	7.4	5.1	7.0(1.1)
생산	출하	-14.9	-5.8	21	12.8	-1.7	21.8	17.2	9.9	11.9	14.4	2.4	11.9	7.2	4.9	7.5(1.8)
생건	내수	-15.7	-5.9	3.4	12.3	-1.8	21.2	15.4	6.6	8.3	11.5	-2.2	7.2	3.8	2.5	3.9(-0.9)
	수출	-13.8	-5.7	0.4	13.3	-1.7	22.5	19.7	14.5	16.9	18.2	8.6	18.4	11.6	8.0	11.8(5.2)
	서비스업생산	-0.3	2.4	1.9	3.7	2.0	5.7	4.0	2.3	3.1	3.9	-0.2	2.7	3.3	4.2	3.8(-1.6)
소비	소비재 판매	-4.7	1.5	28	10.8	2.6	9.9	4.9	7.5	5.1	6.6	4.5	5.1	5.7	4.4	2.8(-3.2)
투자	설비투자	-17.9	-12.9	-9.9	10.2	-8.2	25.5	24.5	29.3	13.5	25.1	17.1	6.6	4.8	-3.5	-4.5(-2.0)
물가		3.9	2.8	20	2.4	2.9	27	2.6	2.9	3.6	2.9	4.8	4.8	4.2	4.8	3.9(-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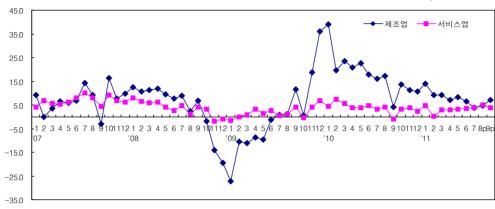
- 주:1) 광공업 생산은 광업(C), 제조업(D), 전기·가스업(E, F)을 포함하나 거의 대부분 제조업을 대변함.
 -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 개정, 2007.12.28)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 및 임대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S),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를 포괄하며, 이 중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산업에서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은 제외함.
 - 3) 물가지수는 10월 기준임.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2011년 10월 생활물가지수는 124.2를 기록하여 전월대비 0.2% 하락, 전년동월대비 3.2% 상승하였으며, 특히 식품 부문은 전월대비 1.5% 하락, 전년동월대비 1.4% 상승함.

[그림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단위:%,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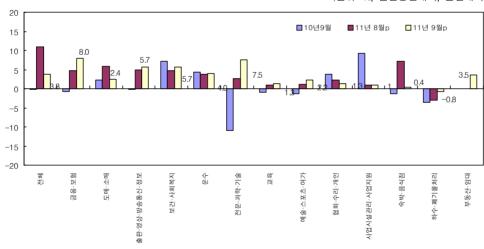


주:p는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2011. 10), 『2011년 9월 산업활동동향』.

[그림 2]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 추이

(단위:%,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주:p는 잠정치임. 자료:통계청, KOSIS.

(김복순, 노동정책분석실 책임연구원)

◈ 취업자 증가 지속

- 2011년 10월 중 경제활동인구는 25.40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05천 명(1.6%) 증가함.
 - 남성 경제활동인구는 14,805천 명으로 202천 명(1.4%) 증가하였고, 여성은 10,604 천 명으로 203천 명(2.0%) 증가함.
- 2011년 10월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61.7%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함.
 - 성별로 보면 남성(73.6%)은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하였고, 여성(50.4%)은 전년 동월대비 0.4%p 상승함(그림 3 좌측 참조).
- 2011년 10월 중 고용률은 59.9%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함.
 - 남성 고용률은 71.2%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하였고, 여성 고용률은 49.1%로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함(그림 3 우측 참조).
- 2011년 10월 중 취업자는 24,673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01천 명(2.1%) 증가함.
 - 성별로 보면, 남성 취업자는 14,334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48천 명(1.8%)이 증가하였고, 여성 취업자는 10,340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53천 명(2.5%)이 증가함 (그림 4 참조).
- 2011년 10월 중 실업자는 736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6천 명(-11.6%) 감소하였으며, 실업률은 2.9%로 전년동월대비 0.4%p 하락함.

〈표 2〉 최근의 고용 동향

(단위:천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2010										2011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七/1	2/4군기	3/4世/1	4/4 七 /1	10월	1/4군기	2/4군기	3/4군기	9월	10월
경 제	활동 역	인 구	24,166 (1.5)	25,038 (1.5)	24,993 (1.4)	24,796 (1.4)	25,004 (1.4)	24,488 (1.3)	25,437 (1.6)	25,269 (1.1)	25,076 (0.7)	25,409 (1.6)
참	가	율	59.8	61.8	61.5	60.8	61.4	59.9	62.0	61.5	61.0	61.7
취	업	자	23,037 (0.6)	24,170 (1.8)	24,120 (1.6)	23,989 (1.5)	24,172 (1.3)	23,459 (1.8)	24,572 (1.7)	24,483 (1.5)	24,318 (1.1)	24,673 (2.1)
고	용	률	57.0	59.6	59.3	58.9	59.4	57.4	59.9	59.5	59.1	59.9
실	업	자	1,130	868	873	808	832	1,028	865	786	758	736
실	업	률	4.7	3.5	3.5	3.3	3.3	3.9	3.4	3.1	3.0	2.9
비경제	데활동	인구	16,254 (1.0)	15,493 (1.0)	15,656 (0.8)	15,962 (0.3)	15,711 (0.8)	16,392 (0.8)	15,559 (0.4)	15,847 (1.2)	16,065 (1.9)	15,760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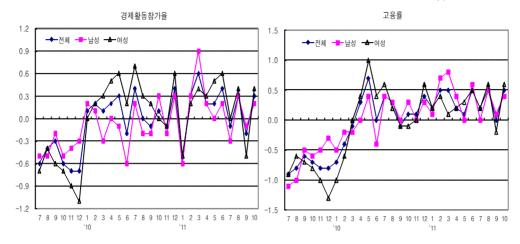
주:()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고용률 = 취업자/생산가능인구*100 자료: 통계청(2011, 11), 『2011년 10월 고용동향』.

104_노동리뷰 2011년 12월호

- 남성 실업자는 47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6천 명(-8.9%) 감소하였고, 여성 실업자는 264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0천 명(-16.0%) 감소함.
- 실업률은 남성이 3.2%로 전년동월대비 0.3%p 감소하였고, 여성은 2.5%로 전년동 월대비 0.5%p 감소함.

[그림 3]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좌)과 고용률(우)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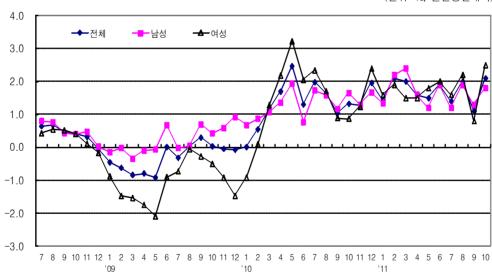
(단위:%p,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그림 4] 성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 2011년 10월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15.760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9천 명(0.3%) 증가함.
 -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5,32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8천 명(0.3%) 증가하였고,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10,43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1천 명(0.3%) 증가함.
 -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17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7천 명 감소함.
 -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중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쉬었음' 은 1,500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4천 명(9.0%) 증가함. 정규교육기관 재학,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수강을 포함하는 '재학·수강'은 4,372천 명으로 97천 명(-2.2%) 감소함.
- ◈ 제조업 취업자 감소,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증가세 지속
- 2011년 10월 중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 업(272천명, 3.3%), 전기·운수·통신·금융업(160천명, 5.6%), 도소매·숙박음식점 업(119천명, 2.2%)에서 증가한 반면, 제조업(-55천명, -1.3%), 농림어업(-33천명, -1.8%) 등에서는 감소함.

〈표 3〉산업별 취업자

(단위:천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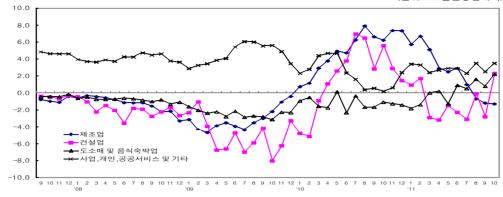
		2010						2011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正/1	2/4판기	3/4군/1	4/4군기	10월	1/4正기	2/4판기	3/4군기	9월	10월
전 산 업	23,037	24,170	24,120	23,989	24,172	23,459	24,572	24,483	24,318	24,673
		(1.8)	(1.6)	(1.5)	(1.3)	(1.8)	(1.7)	(1.5)	(1.1)	(2.1)
농림어업	1,235 (-11.7)	1,733 (-4.6)	1,754 (-2.5)	1,544 (-2.2)	1,790 (-3.0)	1,207 (-2.3)	1,736 (0.2)	1,704 (-2.9)	1,698 (-3.3)	1,757 (-1.8)
제조업	3,911 (1.6)	4,015 (4.5)	4,053 (6.9)	4,131 (7.0)	4,098 (6.2)	4,139 (5.8)	4,127 (2.8)	4,041 (-0.3)	4,014 (-1.2)	4,044 (-1.3)
건설업	1,644 (-3.6)	1,816 (2.5)	1,791 (5.4)	1,761 (3.3)	1,780 (5.6)	1,641 (-0.2)	1,774 (-2.3)	1,755 (-2.0)	1,723 (-2.8)	1,821 (2.3)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	5,532 (-1.0)	5,461 (-1.3)	5,443 (-1.2)	5,442 (-1.3)	5,394 (-1.1)	5,471 (-1.1)	5,457 (-0.1)	5,496 (1.0)	5,420 (0.8)	5,513 (2.2)
사업 • 개인 • 공공 서비스업 및 기타	7,859 (3.2)	8,294 (3.9)	8,244 (0.9)	8,234 (1.0)	8,250 (0.2)	8,097 (3.0)	8,529 (2.8)	8,473 (2.8)	8,450 (2.5)	8,521 (3.3)
전기 • 운수 • 통신 및 금융업	2,834 (4.1)	2,831 (2.4)	2,816 (2.3)	2,855 (1.9)	2,841 (3.0)	2,880 (1.6)	2,933 (3.6)	3,001 (6.6)	3,002 (6.1)	3,000 (5.6)

- 주:1)()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 2) 2009년부터 9차 개정 표준산업분류를 적용.
 - 3)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는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부동산 및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

자료: 통계청(2011.11), 『2011년 10월 고용동향』.

[그림 5] 산업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 상용직 증가 지속

○ 2011년 10월 중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는 7,065천 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71천 명(1.0%) 증가하였고, 임금근로자는 17,60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30천 명(2.5%) 증가함.

〈표 4〉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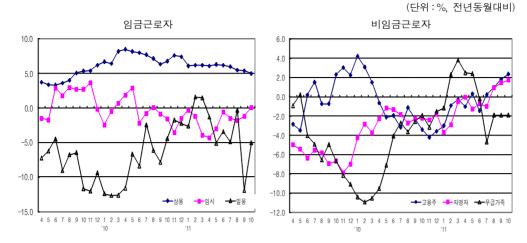
(단위:천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		0,	,		, ., /-/
			2010					2011		
	1/4 [7]	0/4 년 71	2/4 년 71	4/4 H 7 I		1/4 년 71	0/4 년 71	2/4 브 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0월	1/4분기	2/4분기	3/4분기	9월	10월
전 체	23,037	24,170	24,120	23,989	24,172	23,459	24,572	24,483	24,318	24,673
신 세	(0.6)	(1.8)	(1.6)	(1.5)	(1.3)	(1.8)	(1.7)	(1.5)	(1.1)	(2.1)
u10177771	6,638	7,023	6,994	6,778	6,994	6,542	7,004	6,965	6,940	7,065
비임금근로자	(-3.5)	(-2.6)	(-2.4)	(-2.5)	(-2.4)	(-1.5)	(-0.3)	(-0.4)	(-0.2)	(1.0)
되어어즈	5,514	5,696	5,646	5,514	5,624	5,399	5,657	5,680	5,692	5,731
자영업주	(-1.9)	(-1.6)	(-2.3)	(-2.6)	(-2.5)	(-2.1)	(-0.7)	(0.6)	(1.6)	(1.9)
ㅁㄱ키ᄌ죄ᅱ	1,124	1,327	1,348	1,264	1,370	1,143	1,348	1,285	1,248	1,334
무급가족종사자	(-10.6)	(-6.9)	(-3.0)	(-2.2)	(-1.9)	(1.7)	(1.5)	(-4.7)	(-7.3)	(-2.6)
이그그ㅋㅋ	16,398	17,148	17,126	17,211	17,178	16,917	17,568	17,518	17,378	17,608
임금근로자	(2.3)	(3.8)	(3.3)	(3.2)	(2.9)	(3.2)	(2.5)	(2.3)	(1.6)	(2.5)
상용근로자	9,808	10,060	10,158	10,320	10,280	10,413	10,681	10,731	10,764	10,796
영용근도시	(7.1)	(8.2)	(7.1)	(7.3)	(6.8)	(6.2)	(6.2)	(5.6)	(5.4)	(5.0)
임시근로자	4,892	5,179	5,148	5,052	5,089	4,804	5,041	5,072	5,047	5,094
급시근도사	(-0.7)	(8.0)	(-0.5)	(-2.2)	(-1.6)	(-1.8)	(-2.7)	(-1.5)	(-1.2)	(0.1)
일용근로자	1,699	1,909	1,820	1,838	1,809	1,701	1,846	1,716	1,567	1,718
글 앙 근도시	(-12.5)	(-8.8)	(-5.4)	(-2.8)	(-4.4)	(0.1)	(-3.3)	(-5.7)	(-11.9)	(-5.0)
36시간 미만	4,851	3,197	3,329	3,090	2,871	3,246	3,210	8,464	15,672	3,114
30시간 미인	(56.9)	(6.7)	(-1.8)	(4.4)	(3.7)	(-33.1)	(0.4)	(154.2)	(419.1)	(8.5)
261171 0111	17,,671	20,705	20,362	20,620	21,030	19,739	21,067	15,419	8,050	21,251
36시간 이상	(-8.7)	(1.1)	(2.4)	(1.1)	(0.9)	(11.7)	(1.7)	(-24.3)	(-61.2)	(1.1)

주:()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자료: 통계청(2011.11), 『2011년 10월 고용동향』.

[그림 6] 임금근로자(좌) 및 비임금근로자(우) 증가율



주:고용주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이고 자영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임. 자료:통계청, KOSIS.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0,796천 명으로 517천 명(5.0%) 증가한 반면, 임시 근로자는 5,094천 명으로 5천 명(0.1%) 증가하였고, 일용근로자는 1,718천 명으로 91천 명(-5.0%) 감소함.
- 상용근로자 중심으로 임금근로자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음 (그림 6 우측 참조).
- 고용주, 자영업자는 소폭 증가했으며, 무급가족종사자는 감소함.
- 자영업자는 3개월째 증가세 이어지고 있음
- 2011년 10월 중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를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3,114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43천 명(8.5%) 증가하였고,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1,251천 명으로 221천 명(1.1%) 증가함.
 - 18시간 미만 취업자 988천 명 중에서 일거리가 없거나 사업부진 등의 경제적 이유로 추가취업 및 전직을 희망하는 자는 9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9천명 (-17.0%) 감소함.
- ◈ 전년동월대비 모든 학력에서 실업률 감소
- 2011년 10월 중 연령별 실업률은 전 연령대에서 감소함.
 - 15~29세(6.7%, -0.3%p), 30대(2.9%, -0.5%p), 40대(2.0%, -0.4%p), 50대(1.8%, -0.5%p), 60세 이상(1.7%, -0.1%p)에서 감소함.

- 교육정도별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중졸 이하(2.1%, 0.1%p), 고졸(3.3%, -0.7%p), 대졸 이상(2.9%, -0.5%p) 모든 학력에서 감소함.
- 2011년 10월 중 전체 실업자 736천 명을 과거 취업경험 유무로 살펴보면, 취업무경험 실업자는 3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천 명 증가하였고, 취업유경험 실업자는 699천 명으로 99천 명 감소함.

〈표 5〉 연령별·교육수준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천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10							2011		
	1/4분기	0/4 브 기	3/4분기	4/4분기		1/4 년 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군기	시4군기	3/4군기	4/4군기	10월	1/4분기	2/4군기	3/4군기	9월	10월
전 체	1,130(4.7)	868(3.5)	873(3.5)	808(3.3)	832(3.3)	1,028(4.2)	865(3.4)	786(3.1)	758(3.0)	736(2.9)
15~29세	408(9.5)	332(7.7)	323(7.6)	297(7.1)	288(7.0)	372(8.8)	332(7.9)	284(6.7)	256(6.3)	276(6.7)
30~39세	234(3.9)	217(3.6)	213(3.5)	194(3.2)	205(3.4)	237(4.0)	211(3.5)	189(3.2)	182(3.1)	174(2.9)
40~49세	192(2.9)	154(2.3)	165(2.5)	151(2.2)	165(2.4)	167(2.5)	145(2.1)	138(2.0)	137(2.0)	136(2.0)
50~59세	150(3.2)	105(2.1)	113(2.3)	114(2.3)	119(2.3)	133(2.7)	107(2.0)	108(2.1)	115(2.2)	96(1.8)
60세 이상	146(5.8)	61(2.1)	59(2.0)	53(1.9)	55(1.8)	119(4.5)	70(2.3)	67(2.1)	68(2.2)	54(1.7)
중졸 이하	241(5.1)	131(2.5)	131(2.5)	112(2.2)	107(2.0)	195(4.1)	112(2.1)	119(2.3)	134(2.6)	108(2.1)
고졸	493(5.0)	386(3.8)	408(4.0)	392(3.9)	397(4.0)	465(4.6)	408(4.0)	372(3.7)	335(3.4)	331(3.3)
대졸 이상	396(4.2)	352(3.6)	334(3.5)	304(3.1)	328(3.4)	369(3.8)	345(3.4)	296(2.9)	289(2.9)	297(2.9)
취업무경험실업자	57	46	35	38	35	52	45	45	38	37
취업유경험실업자	1,072	822	838	770	797	977	820	741	720	699

주:()안의 수치는 실업률.

자료: 통계청(2011.11), 『2011년 10월 고용동향』.

(성재민, 노동정책분석실 책임연구원)

임금 및 근로시간동향

- ◈ 2011년 8월 명목임금상승률, 전년동월대비 6.6% 상승
- 2011년 8월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893천 원으로 전년 동월(2,714천 원)대비 6.6% 상승함.
 - 상용근로자의 경우 기본급 등을 포함한 정액급여는 전년동월대비 4.9% 상승해 2,339천 원을 기록함.

주요 노동동향_109

- 상용근로자의 초과급여의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7.4% 감소하였으나, 특별급여 증가율은 8.8% 상승하여 2011년 8월 상용근로자 임금상승률은 2010년 8월 대비 4.8% 증가한 3,073천 원을 기록함.
- 임시·일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17.4% 상승한 1.238천 원의 임금총액을 기록함.
- 상용근로자의 특별급여 상승과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 상승에 힘입어 전체근 로자 임금총액은 플러스 증가를 기록함.
 - ※ 초과급여 : 연장(야근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특별급여 :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

○ 실질임금은 1.2% 증가

- 소비자물가 상승률(2005년 기준)을 감안한 2011년 8월 실질임금 총액은 2,362천 원으로 2010년 8월 대비 1.2% 증가함.
- 물가가 반영된 실질임금은 2011년 2월 이후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으나 2011년 8월 플러스 증가로 돌아섬(그림 7 참조).

〈표 6〉임금관련 주요지표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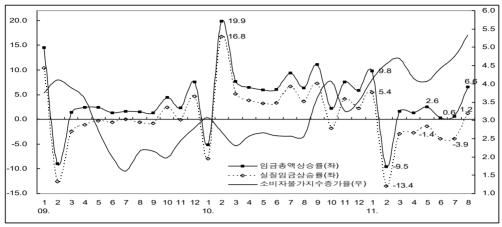
(단위: 천 원/월, 2005=100.0, %)

									2011		
		2009	2010								
		2009	2010	상반기	2/4분기	8월	상반기	1/4분기	2/4분기	3/4+	분기
					2/4판기	0 2		1/4군기	<i>식</i> 4군기	7월	8월
전체 근		2,636	2,816	2,744	2,666	2,714	2,766	2,830	2,703	2,898	2,893
임금 총 약		(2.6)	(6.8)	(6.6)	(6.2)	(6.3)	(0.8)	(0.2)	(1.4)	(0.6)	(6.6)
	임금	2,863	3,047	2,966	2,903	2,933	2,930	2,992	2,869	3,079	3,073
	총액	(2.2)	(6.4)	(6.6)	(6.3)	(5.2)	(-1.2)	(-1.3)	(-1.2)	(-1.2)	(4.8)
상용	정액	2,139	2,234	2,217	2,223	2,229	2,312	2,308	2,316	2,344	2,339
	급여	(4.0)	(4.5)	(4.5)	(4.8)	(4.7)	(4.3)	(4.4)	(4.2)	(5.0)	(4.9)
근로자	초과	175	196	190	198	195	175	168	183	182	180
	급여	(-2.2)	(12.2)	(15.3)	(13.4)	(11.3)	(-7.9)	(-8.4)	(-7.4)	(-7.2)	(-7.4)
	특별	550	617	560	483	509	442	516	369	553	554
	급여	(-2.8)	(12.3)	(13.1)	(10.7)	(5.1)	(-21.0)	(-18.9)	(-23.5)	(-19.8)	(8.8)
임시 • 일	일용근로	1,073	1,056	1,057	1,062	1,054	1,172	1,149	1,192	1,242	1,238
자 임금	총액	(1.9)	(-1.6)	(-1.0)	(0.1)	(-0.2)	(10.8)	(9.2)	(12.3)	(12.7)	(17.4)
실질임금		2,337	2,426	2,384	2,306	2,333	2,303	2,364	2,243	2,388	2,362
(전체 근		(-0.2)	(3.8)	(3.8)	(3.5)	(3.7)	(-3.4)	(-4.1)	(-2.7)	(-3.9)	(1.2)
소비자물	물가지수	112.8 (2.8)	116.1 (2.9)	115.1 (2.6)	115.6 (2.6)	116.3 (2.6)	120.1 (4.3)	119.7 (4.5)	120.5 (4.2)	121.4 (4.7)	122.5 (5.3)

주:()안은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자료:고용노동부,『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은행, http://ecos.bok.or.kr/

[그림 7] 임금상승률 추이

(단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 건설업, 도소매업, 제조업 등에서 임금상승률이 높게 나타남
- 건설업의 임금 상승이 가장 높은 반면, 운수업의 임금 감소가 가장 높음.
 - 2011년 8월 전년동월대비 산업별 월평균 임금총액의 상승률을 보면, 건설업(14.7%),

〈표 7〉 산업별 임금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천 원,%)

	2010			20)11
	2010	상반기	8월	상반기	8월
전 산 업	2,816 (6.8)	2,744 (6.6)	2,714 (6.3)	2,766 (0.8)	2,893 (6.6)
광업	3,000 (7.3)	2,933 (6.9)	2,971 (10.2)	3,324 (13.4)	2,984 (0.4)
제조업	2,985 (9.1)	2,854 (8.9)	2,848 (6.9)	2,898 (1.5)	3,159 (10.9)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5,455 (7.0)	5,281 (8.2)	4,198 (5.3)	5,189 (-1.7)	4,171 (-0.7)
하수 • 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2,441 (5.2)	2,360 (5.3)	2,401 (6.3)	2,391 (1.3)	2,599 (8.2)
건설업	1,944 (7.9)	1,925 (6.9)	1,877 (14.2)	2,175 (13.0)	2,152 (14.7)
도매 및 소매업	2,769 (7.1)	2,701 (6.8)	2,634 (6.2)	2,817 (4.3)	3,013 (14.4)
운수업	2,381 (5.4)	2,307 (5.7)	2,635 (14.1)	2,316 (0.4)	2,495 (-5.3)
숙박 및 음식점업	1,462 (5.0)	1,434 (3.0)	1,459 (6.1)	1,624 (13.2)	1,614 (10.6)
출판 • 영상 • 방송통신서비스업	3,385 (4.7)	3,320 (4.7)	3,210 (2.4)	3,670 (10.6)	3,522 (9.7)
금융 및 보험업	4,680 (4.7)	4,759 (7.1)	4,146 (2.5)	4,796 (0.8)	4,498 (8.5)
부동산업 및 임대업	1,965 (4.3)	1,983 (6.4)	1,839 (2.6)	1,990 (0.3)	1,945 (5.8)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3,957 (6.9)	3,782 (6.8)	3,990 (-0.7)	3,682 (-2.6)	4,346 (8.9)
사업서비스업	1,848 (8.2)	1,816 (8.3)	1,758 (6.1)	1,654 (-8.9)	1,785 (1.5)
교육서비스업	3,157 (1.4)	3,154 (0.4)	3,229 (2.7)	2,978 (-5.6)	3,061 (-5.2)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594 (2.4)	2,553 (2.0)	2,508 (2.4)	2,429 (-4.9)	2,437 (-2.8)
여가관련 서비스업	2,107 (0.9)	2,054 (-0.4)	1,904 (1.3)	2,078 (1.2)	1,978 (3.9)
협회 • 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102 (4.0)	2,064 (4.6)	2,055 (2.6)	2,147 (4.0)	2,302 (12.0)

주:1) 전체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총액.

2)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3) 9차 표준산업분류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도매 및 소매업(14.4%), 제조업(10.9%), 숙박 및 음식점업(10.6%) 순으로 나타남.
- 반면 2011년 8월 전년동월대비 임금이 감소한 산업은 운수업(-5.3%), 교육서비스업(-5.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2.8%) 등으로 나타남.
- 월평균 임금총액이 가장 많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이며, 가장 적은 산업은 숙박및 음식점업으로 나타남.
- 금융 및 보험업은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 및 특별급여가 다른 산업에 비해 높고, 숙박 및 음식점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정액급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전 규모에서 명목임금 상승

- 2011년 8월 규모별 명목임금상승률은 5~299인, 300인 이상 규모에서 모두 상승
 - 상용근로자 5~299인 규모의 명목임금상승률은 2011년 8월 기준 2,511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5.0%, 300인 이상 사업체는 4,408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9.6% 상 승함.
 -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총액 상승은 특별급여가 증가한 데 기인함.

〈표 8〉 사업체규모별 상용근로자 임금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천 원/월,%)

					20	11
		2010	상반기	8월	상반기	8월
	상용임금전체	3,047 (6.4)	2,966 (6.6)	2,933 (5.2)	2,930 (-1.2)	3,073 (4.8)
전 규모	정액급여	2,234 (4.5)	2,217 (4.5)	2,229 (4.7)	2,312 (4.3)	2,339 (4.9)
(5인 이상)	초과급여	196 (12.2)	190 (15.3)	195 (11.3)	175 (-7.9)	180 (-7.4)
	특별급여	617 (12.3)	560 (13.1)	509 (5.1)	442 (-21.0)	554 (8.8)
	상용임금전체	2,699 (5.5)	2,639 (5.9)	2,607 (5.5)	2,611 (-1.1)	2,679 (2.7)
5~299인	정액급여	2,082 (4.3)	2,065 (4.5)	2,079 (4.3)	2,177 (5.4)	2,204 (6.0)
5~299E	초과급여	176 (13.6)	172 (17.6)	175 (9.8)	147 (-14.2)	154 (-11.8)
	특별급여	441 (8.4)	403 (9.1)	353 (10.5)	287 (-28.7)	320 (-9.3)
	상용임금전체	4,291 (9.1)	4,129 (8.8)	4,102 (5.2)	4,132 (0.1)	4,496 (9.6)
20001 0141	정액급여	2,779 (5.2)	2,756 (4.8)	2,768 (6.1)	2,823 (2.4)	2,824 (2.0)
300인 이상	초과급여	268 (9.6)	257 (10.7)	266 (15.6)	282 (9.7)	275 (3.2)
	특별급여	1,245 (18.7)	1,115 (19.6)	1,067 (0.8)	1,027 (-7.9)	1,397 (3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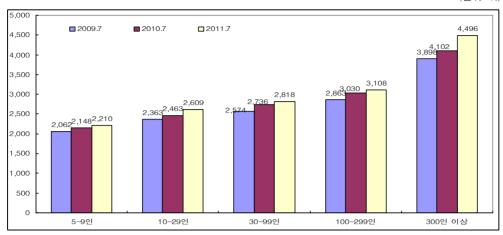
주:1) 상용근로자 임금총액.

2)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8] 상용근로자 사업체 규모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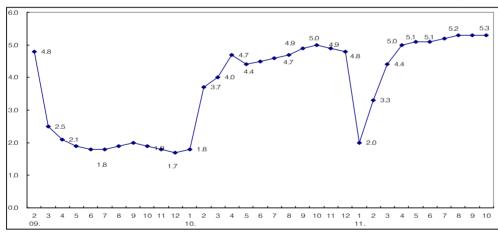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1년 10월 협약임금 인상률 5.3%

- 2011년 10월 협약임금 인상률은 5.3%를 기록
 - 2011년 10월 말 협약임금 인상률(임금총액 기준)은 5.3%로 2010년 같은 기간의 인상률(5.0%)에 비해 0.3%p 상승하였음.

[그림 9] 협약임금 인상률 추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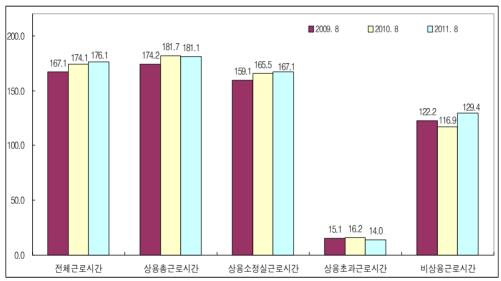
- 주:1) 협약임금 인상률이란 1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가 협약으로 정한 임금인상률로서 일반적으로 승진에 따른 인 상분, 초과급여, 특별상여금 등 변동성 급여는 제외됨. 따라서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명목임금의 상승률과 는 다름.
 - 2) 월별 협약임금인상률은 당월분이 아니라 당월까지 누계분 인상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e-나라지표, www.index.go.kr

- ◆ 2011년 8월 근로시간, 전년동월대비 1.1% 증가
- 2011년 8월 근로시간, 전년동월대비 1.1% 증가
 - 2011년 8월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 근로시간은 176.1시간을 기록하여 전년 동월(174.1시간)에 비해 2.0시간(1.1)% 증가함.
 - 상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181.1시간으로 전년동월(181.7시간)대비 0.3%, 초과 근로시간은 14.0시간으로 전년동월(16.2시간)대비 13.6% 감소한 반면, 소정실근로 시간은 167.1시간으로 전년동월(165.5시간)대비 1.0% 증가함(그림 9 참조).
 - ─ 한편, 임시・일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129.4시간으로 전년동월(116.9시간)대비12.5시간(10.7%) 증가함.

[그림 10] 내역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

(단위 : 시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의 근로시간 증가
-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의 근로시간은 증가한 반면,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서비 스업의 근로시간은 감소함.
 - 2011년 8월 산업별 근로시간을 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185.1시간, 11.4%), 건설업 (155.4시간, 3.6%)에서 근로시간이 증가하였고, 이는 주로 임시·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 증가에 기인함.

114_노동리뷰 2011년 12월호

〈표 9〉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시간,%)

	2009	2010			20	11
	2009	2010	상반기	8월	상반기	8월
전 산 업	176.1 (-0.3)	176.7 (0.3)	175.1 (0.6)	174.1 (4.2)	175.1 (0.0)	176.1 (1.1)
광업	187.6 (4.0)	188.1 (0.3)	185.2 (-0.8)	187.9 (4.4)	185.5 (0.2)	188.7 (0.4)
제조업	188.5 (-0.8)	192.1 (1.9)	190.5 (3.4)	185.2 (5.0)	189.9 (-0.3)	187.2 (1.1)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77.9 (2.5)	176.9 (-0.6)	174.9 (0.2)	175.8 (1.6)	175.2 (0.2)	175.9 (0.1)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	194.0 (0.3)	192.9 (-0.6)	191.2 (-0.1)	192.5 (3.9)	184.7 (-3.4)	188.8 (-1.9)
건설업	147.2 (-5.5)	146.1 (-0.7)	146.9 (-2.1)	141.2 (-1.1)	154.2 (5.0)	155.4 (10.1)
도매 및 소매업	179.0 (0.2)	177.2 (-1.0)	175.8 (-0.8)	175.3 (3.1)	173.7 (-1.2)	174.2 (-0.6)
운수업	184.4 (8.0)	184.6 (0.1)	183.0 (0.9)	185.3 (2.5)	178.0 (-2.7)	187.3 (1.1)
숙박 및 음식점업	164.3 (-3.5)	163.7 (-0.4)	161.2 (-1.8)	166.2 (2.3)	186.3 (15.6)	185.1 (11.4)
출판 • 영상 • 방송통신서비스	166.8 (0.4)	166.2 (-0.4)	164.8 (0.6)	164.9 (4.8)	162.9 (-1.2)	165.0 (0.1)
금융 및 보험업	166.8 (0.5)	165.3 (-0.9)	163.5 (-1.4)	165.2(6.1)	161.2 (-1.4)	166.3 (0.7)
부동산업 및 임대업	202.0 (-1.2)	200.4 (-0.8)	199.2 (-1.0)	195.9 (0.8)	193.2 (-3.0)	187.6 (-4.2)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7.7 (0.1)	166.3 (-0.8)	164.5 (-0.5)	166.3 (5.7)	164.2 (-0.2)	165.6 (-0.4)
사업서비스업	179.0 (-1.3)	180.1 (0.6)	176.9 (-0.6)	180.9 (5.2)	168.7 (-4.6)	173.7 (-4.0)
교육서비스업	153.7 (1.9)	149.9 (-2.5)	147.7 (-3.2)	150.3 (3.2)	150.3 (1.8)	157.6 (4.9)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76.4 (0.2)	176.5 (0.1)	174.4 (0.2)	177.0 (4.9)	171.5 (-1.7)	175.1 (-1.1)
여가관련 서비스업	161.6 (1.6)	158.7 (-1.8)	157.6 (-2.1)	161.1 (3.3)	155.4 (-1.4)	162.9 (1.1)
협회 • 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	175.5 (-0.2)	173.9 (-0.9)	172.7 (0.1)	172.7 (2.7)	174.0 (0.8)	173.1 (0.2)

주:1) 전체 임금근로자 기준.

2)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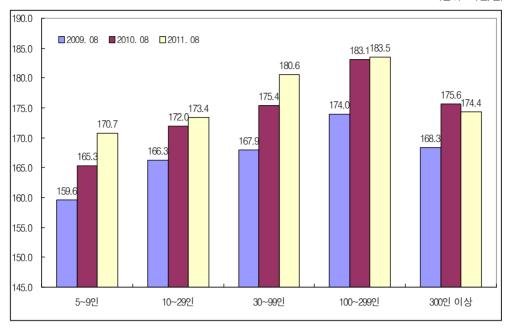
3) 9차 표준산업분류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한편, 부동산업 및 임대업(187.6시간, 4.2%), 사업서비스업(173.7시간, 4.0%) 등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함.
- 2011년 8월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은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업(188.8시간)이 가장 길었으며, 건설업(155.4시간)이 가장 짧은 업종으로 나타남.
- ◈ 300인 이상 규모에서 근로시간 감소
- 2011년 8월 규모별 근로시간은 5~299인 사업장에서 증가함.
 - 상용근로자 5~2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6.5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6%증가한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는 174.4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7% 감소함.

[그림 11] 규모별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

(단위:시간/월)



주:전체 근로자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정성미, 노동정책분석실 책임연구원)

가계수지 동향

- ◆ 2011년 3/4분기 2인 이상 전국가구의 소득과 소비 증가
- 2011년 3/4분기 전국기구의 소득은 근로소득(6.2%), 사업소득(4.9%), 이전소득(10.7%)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6.5% 증가함(실질로는 1.6% 증가).
 - 전국가구의 경상소득은 고용지표 개선에 따른 근로소득(6.2%), 사업소득(4.9%) 증가에 기인해 6.3% 증가하였으며, 비경상소득은 1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소비지출은 교통(12.6%), 의류·신발(9.4%), 식료품·비주류음료(7.0%)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5.8%로 증가하였음(실질로는 2.1% 증가).

116_노동리뷰 2011년 12월호

- 비소비지출의 경우, 소득세 및 자동차세 등의 경상조세(5.6%), 사회보험(12.5%), 연금지출(9.2%) 등에서 증가를 주도하여 전년동기대비 7.4% 증가하였음(실질로는 2.5%).
-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전년동기대비 6.3% 증가하였으며, 가처분소득에서 소비지 출을 차감한 가계흑자액은 70만 8천 원 수준으로 전년동기대비 7.7% 증가하였음.

〈표 10〉 2인 이상 전국가구의 분기별 가계수지 동향

(단위:천 원, %, %p)

	20	10	2011						
	3/4분	본기	2/4분	분기	3/4+	분기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소득	3,660.2	6.1	3,713.5	4.7	3,897.6	6.5			
경상소득	3,559.2	6.3	3,577.9	4.7	3,784.7	6.3			
근로소득	2,423.8	6.6	2,388.0	4.8	2,573.6	6.2			
사업소득	807.2	5.9	835.5	2.8	846.4	4.9			
재산소득	12.3	-14.7	16.1	17.5	14.8	20.8			
이전소득	316.0	6.7	338.3	7.9	349.9	10.7			
비경상소득	101.1	-1.2	135.6	7.3	112.9	11.7			
소비지출	2,308.8	5.4	2,303.7	4.3	2,443.6	5.8			
처분가능소득	2,965.6	4.8	3,012.6	4.4	3,151.3	6.3			
흑자액	656.8	2.7	708.9	4.6	707.7	7.7			
흑자율	22.1	-0.5p	23.5	0.1p	22.5	0.3p			
평균소비성향	77.9	0.5p	76.5	-0.1p	77.5	-0.3p			

주:1) 가처분소득-소득-비소비지출(조세, 사회보험료 등의 공적지출과 타가구 송금 등의 사적지출이 포함됨)

- 2) 흑자액=가처분소득-소비지출
- 3) 평균소비성향=(소비지출/가처분소득)×100

자료: 통계청(2011.11), 『2011년 3/4분기 가계동향』.

- 2011년 3/4분기 소득은 모든 분위에서 전년동기대비 증가했으며, 1분위(12.3%)와 5분 위(7.5%) 모두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소비지출은 모든 분위에서 증가했으며, 2~3분위는 8.4%~8.6% 수준의 비교적 높은
 증가율를 보인 반면, 1분위(5.7%)와 4분위(3.0%), 5분위(5.1%)는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나타냄.
 - 가처분소득은 1분위에서 전년동기대비 6.9%, 5분위가 6.7%의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임.

〈표 11〉 2011년 3/4분기 소득 5분위별 소득 및 지출 현황

(단위:천 원, %, %p)

	1눈	부위	2분위		3분	-위	4분	부위	5분	위
가구원 수	2.56명		3.17명		3.39)명	3.6	2명	3.66명	
가구주 연령	57.	3세	47.	9세	45.6세		45.7세		47.2	2세
	금액	증감 률 (차)								
소득	1,209.1	7.0	2,533.9	5.9	3,554.3	7.3	4,680.3	5.8	7,505.1	6.6
경상소득	1,144.0	7.4	2,471.2	5.9	3,482.4	7.4	4,587.1	5.7	7,233.5	6.2
근로소득	550.9	12.3	1,437.2	1.7	2,274.9	9.9	3,149.2	2.5	5,451.6	7.5
비경상소득	65.1	-0.7	62.7	6.2	71.9	2.2	93.2	11.9	271.6	19.6
소비	1,223.2	5.7	1,933.1	8.6	2,411.0	8.4	2,875.1	3.0	3,773.5	5.1
처분가능소득	954.9	6.9	2,094.8	5.1	2,921.4	6.2	3,801.4	6.1	5,979.7	6.7
흑자액	-268.3	-1.8	161.7	-24.3	510.4	-3.1	926.3	17.1	2,206.2	9.5
흑자율	-28.1	1.4p	7.7	-3.0p	17.5	-1.7p	24.4	2.3p	36.9	0.9p
평균소비성향	128.1	-1.4p	92.3	3.0p	82.5	1.7p	75.6	-2.3p	63.1	-0.9p

(반정호, 노동정책분석실 책임연구원)

노사관계 동향

◈ 노사분규 발생 추이

○ 2011년 1월 1일부터 11월 22일 현재까지 노사분규 누적발생건수는 50건으로 나타나며, 근로손실일수(2011년 11월 16일 기준)는 384,013일로 집계됨.

〈표 12〉 노사분규 발생 추이

(단위:개소,%)

	2011. 1. 1.~11. 22	전년 동기	증 감(%)
노사분규 발생건수	56	76	△26.3
종 결	49	65	-
진 행	7 (1)	11 (2)	()는 전년도 이월
근로손실일수	406,742	441,839	△7.9

주:당해 연도의 누적치임. 근로손실일수는 11월 16일 기준임. 자료:고용노동부.

118_노동리뷰 2011년 12월호

◈ 주요 분규사업장 동향

○ 장기분규 사업장

■ 하진중공업

- 11월 4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리해고 관련 구제신청 재심사건에 대하여 기각판 정함.1) 해고자 일부가 이에 대해 항의하고, 금속노조 또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기 각결정을 규탄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함.
- 11월 8일, 노사는 현안문제에 대한 실무자 회의를 실시하였고, 11월 9일에는 현안 문제에 대해 노사가 잠정합의에 이름. 이날 노조 지회는 잠정합의안에 대한 총회 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경찰병력이 사내로 진입함에 따라 총회가 무산됨.
- 11월 10일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잠정합의안에 대해 조합원들의 만장일치로 가결함. 이날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 등 4명 고공농성을 해제하고 크레인 밑으로 내려왔고, 경찰은 고공농성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동아대병원으로 호송함. 한편, 이날 오후에 노사는 조인식 및 기자회견을 개최함.
 - 【주요 합의사항】 ▲정리해고자 94명, 본 합의서를 체결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재취업 ▲1인당 생계비 2,000만원 지급(先 1,000만원, 잔액 3회 분할 지급) ▲형사사건은 노사 쌍방 취하, 민사 손배소는 최소화 ▲합의서 효력, 크레인 농성자 4명 전원 퇴거일로부터 발생
- 11월 11일, 노사는 휴업 관련 협의를 시작함. 사측은 11월 21일부로 휴업을 실시 하자는 입장이었음. 그러나 노조는 휴업의 불가피함은 인정하나 12월부터 순환휴 업을 요구함.
- 11월 12일, 부산지방검찰청은 부산지방법원에 김진숙 등 크레인 농성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함(영장기각). 15일, 노조 지회는 조속한 시일 내 사측에 임단협 교섭을 요청하기로 하고, 휴업 대응방안을 논의함. 이날 노사는 휴업 관련 노사협의를 개최하였고, 노조는 휴업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임단협 타결 이후 휴업을 실시하자고 요구함. 사측은 11월 16일 노조에 휴업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전달하되, 노조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휴업 관련 직원설명회를 개최하기로 예정함.
- 11월 16일, 노사는 후속조치 관련 실무협의를 진행하였고, 해고무효확인소송 등 취하서를 11월 17일까지 접수하고 후속조치를 진행하기로 함.2) 또한 형사건 취하

¹⁾ 지난 5월,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함.

²⁾ 이날 정리해고철회 투쟁위원회는 노조사무실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해고무효확인소송과 중노위 구제신청사건 취하 여부에 대하여 논의함. 11월 21일, 정리해고자 전원(94명)은 해고무효확인소송에

는 상호 취하목록을 교환한 후 진행하기로 함. 이날 사측은 노조에 "업무량 고갈에 따른 휴업 실시의 건"이라는 문서를 발송하여 11월 21일부로 휴업실시가 불가 피하니 노조의 협조를 당부함.

- 11월 17일, 노조 지회는 사측이 휴업을 일방적으로 진행할 경우 이에 대응하겠다고 하면서, 18일 "한진은 노조를 말살시키려는 음모를 중단하고 휴업과 관련하여 노조와 성실히 협의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함. 그러나 11월 21일, 사측은 휴업인원 확정 및 인사발령을 예정하였으나 노조반발과 선박 2척에 대한 인도일이 11월 26일인 것 등을 감안하여 12월 1일로 연기한 상황임.

■ 공공운수노조 삼화고속지회

- 1노조3)는 10월 10일부로 전면파업에 돌입함. 이에 사측도 같은 날 인천지방노동 위원회 및 부평구청에 직장폐쇄신고서 제출한 상태임. 이후, 11월 현재까지 분쟁 상태임.
- 노사 양측의 핵심 쟁점은 임금 인상 및 포괄적 임금제와 관련된 사항임.
- 11월 4일, 노사는 실무교섭을 실시하여 11월 3일자 인천광역시 권고안4)에 대한 이견으로 사측이 교섭결렬을 선언한 상태임. 9일, 노사 대표가 회동을 하였음에도 진전 없이 종료하고, 14일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주선으로 교섭을 실시하여 일부 쟁점사항에 의견을 접근시킴.
- 11월 15일, 노사 실무교섭에서 다시 광역버스 월 고정급(260만 원)에 심야수당 포함 여부와 고속버스 근무제 변경(현 4일 근무 2일 휴무, 20일 근무→3일 근무 2일 휴무, 18일 근무)에 대한 이견으로 진전 없이 종료됨. 그러나 이날 노사는 인천시 건설교통국의 중재로 임금교섭은 잠정합의에 이르렀고,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93.6% 찬성)을 거쳐 교섭안을 가결함.
- 11월 17일, 노조는 노사합의에 따라 업무복귀를 실시함. 주요 합의사항은 다음과 같음.

【잠정합의 주요 내용】

<광역> ▲1일 2교대(1일 9.5시간, 26일 근무) ▲월 고정급(상여금 등 포함) 260만 원

대한 취하서를 사측에 제출하였으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취하서는 제출하지 않음.

³⁾ 삼화고속에는 4개의 노조가 병존하고 있음. 공공운수노조 삼화고속지회(1노조, 민주노총), 고속노조 삼화고속지부(2노조, 한국노총), 삼화고속노조(3노조, 미가입), 새희망노동연대 삼화고속노조(4노조, 미가입)

⁴⁾ 노조에 고속버스는 현 근무제 유지, 사측에 광역버스는 월 고정급 260만 원 보장을 토대로 교섭할 것을 권고함.

<고속> ▲4일 근무 2일 휴무(월 20일 근무) 원칙, 원하는 조합원에 한하여 3일 근무 2일 휴무(월 18일 근무) 허용 ▲시급 4.5% 인상

- 전주시내버스 5개사(공공운수노조 5개 분회)
- 11월 중 공공운수노조 4개 분회는 사측의 교섭참여 등을 요구하며 규정속도 준수 등 준법운행·요금통 및 행선판 미부착 운행 등을 계속하였음. 그러나 11월 8일 경에 이르러 버스 3개사(신성, 전일, 호남)5)가 교섭을 통해 2011년 임금 및 단체 협약 체결을 위한 기본합의를 함. 합의서에는 노사 매주 1회 본교섭 진행, 실무교 섭은 횟수에 제한 없이 수시 진행, 본 합의 체결 이후 교섭기간 중 노측은 준법행 위 등 쟁의행위 중단 등을 담고 있음.
- 11월 9일부터 공공운수노조 4개 분회는 준법운행 등을 중단하고 정상운행에 복귀함. 이날 제일여객분회 또한 승무거부 해제선언 후 정상운행을 실시하기로 하여 현장복귀한 상황임.

■ 유성기업

- 11월 5일, 노(2노조)사는 3차 임금교섭을 진행함. 이날 교섭에서 11월 12일 4차 교섭을 예정하였음. 한편, 사측은 5차 2노조 소속의 징계대상자 96명에 대한 사실심리 개최하였음.
- 11월 9일, 대전지법천안지원은 '6·22 불법집회' 관련하여 구속기소된 노조간부 2명에 대해 각 징역 4년 실형을 선고함.6) 다음 날인 10일에는 같은 법원이 해고자 23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에 대하여 해고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일부인용을 결정함.
- 11월 11일, 사측은 5차 징계대상자 96명에 대한 징계양정을 의결하였고, 이로 인해 앞서 12일에 예정된 4차 임금교섭은 연기함(사측이 연기함). 15일에는 사측이 4차·5차 징계대상자의 징계양정 의결결과를 공고하였고(4차 117명: 정직 2명, 견책 115명/5차 94명: 정직 1명, 견책 93명), 11월 18일부로 징계효력이 발생함.

■ 재경택시

- 경기도 수원 소재 재경택시는 2개 노조가 병존하고 있음. 한국노총 소속의 1노조 (조합원 140명)와 올해 7월에 설립한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노조가 있음(조합원 7명).
- 11월 14일, 1노조는 소정근로일수 확대 불가 및 퇴직금 가산제 현행유지, 징계위

⁵⁾ 나머지 1개사(시민여객)도 2011년 3분기 상여금 지급에 합의하고, 3개사에 이어 추가합의에 서명함.

⁶⁾ 이들은 유성기업 2노조 조합원이 아닌 민주노총 충남본부 및 충남건설기계지부의 간부임.

노사동수 구성 등을 요구하며 8월 23일부터 파업을 계속 중임. 한편 사측은 9월 14일부로 파업참가 1노조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함.

- 11월 17일, 노사는 교섭을 실시하였으나 진전 없이 종료하였음.
- 1노조는 2011년 5월부터 6월까지 8차례 단협갱신을 위한 교섭이 진전이 없자 조 정신청 후 교섭창구 단일화절차 진행을 위해 7월에 조정신청을 취하하였음. 교섭 창구 단일화절차에서 1노조가 교섭대표노조로 확정되어 8월에 재차 조정을 신청 하고 조정이 결렬되어 8월부터 파업에 돌입함.
- 9월에는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접근이 있었으나 1노조가 현안사항에 대한 선해결을 요구하여 교섭이 교착되었음. 현안사항은 타임오프(연 3,000시간) 및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한 사항임. 사측은 타임오프 관련 사용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나, 노조는 이를 거부하고 있음. 퇴직금중간정산에 대해서는 노조가 교섭타결즉시 지급할 것을 요구하나 사측은 12월 31일자로 지급하겠다는 입장이었음.
- 그러나 10월에 이르러 노사는 향후 교섭원칙에 합의하여 단체협약 체결과 동시에 일체의 민형사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였음. 그러나 11월에 들어 노조는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전면파업을 계속할 것을 결의함. 11월 21일, 노사가 교섭을 실시하였으나 상호 입장 고수로 교섭에 진전이 없는 상황임. 여전히 사측은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하고 있음. 현재까지 노사간 쟁점사항은 다음과 같음.

【노<사> 주요 쟁점】 ▲소정근로일수: 현행 월 25일 유지 <월 26일> ▲퇴직금: 현행 유지(법정퇴직금에 20% 가산) <법정퇴직금 지급> ▲징계위원회 구성: 노사동수 <노 사동수, 단, 가부동수인 경우 사측 의장이 결정> ▲유니온숍 인정 <수용불가> ▲근무 시간 중 노조활동 보장(총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등)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각 1회 무급 인정> 등

-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
- 노사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9차례 임단협 교섭을 실시하였으나 사측의 교섭안 미제시로 진전 없이 종료하였고 10월에도 마찬가지였음.7) 오히려 10월에는 사측 5개사가 노조의 태업행위에 대하여 조합원 386명을 고소함. 노조는 부산지방노동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이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함. 10월 중순 이후, 13차 교섭에서 성실교섭을 위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15차 교섭에서 단체협약안 57개항 중 조합원 범위, 협약 적용 등 26개 항에 대해 노사가 의견을 접근함. 노사의

⁷⁾ 전국플랜트건설노조는 조합원 6,000여 명이며, 민주노총 건설연맹에 가입되어 있음. 현재 5개 지부 가 활동 중에 있으며 전남동부경남서부, 울산, 포항, 충남, 전북 지부 등이 있음. 한편, 전남동부경남 서부(8월 6일), 포항지부(8월 8일), 충남지부 서산지역(9월 3일)은 타결, 전북지부, 충남지부 당진지역은 교섭 진행 중에 있음.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음.

【노<사> 주요 쟁점】 ▲유급휴일 확대(구정·추석 각 유급 3일, 무급 2일<현행: 구정·추석 각 유급 2일, 무급 2일>, 법정공휴일 유급<현행: 노동자의 날 1일 유급>) <수 용불가> ▲노조전임자 및 간부의 현장출입 보장 <수용불가>

- 11월 1일, 노조는 실무교섭을 취소하고 교섭중단을 선언함. 이미 10월 31일 노조는 전면파업을 유보하고 1주일간 사측과 실무협의키로 한 바 있음. 그러나 1일자로 파업에 돌입한 이후, 11월 3일 재차 파업에 돌입함. 11월 7일, 조합원 480여 명이 작업거부하며 파업에 돌입한 바 있음.
- 11월 9일에는 노사 대표가 울산고용지청에서 실무협의를 실시하였고, 11월 11일에는 본교섭을 재개하였음. 그러나 노사 모두 기존 입장 고수로 진전 없이 종료함.
- 11월 15일, 노조는 정상 근무하였으나 다음 날인 16일에는 유급휴일 확대 등을 요구하며 오후 4시간 파업에 돌입함. 11월 현재까지 교섭일정은 없는 상황임.

■ 국민건강보험공단

- 11월 16일, 노조(사회보험지부)는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김종대 이사장 임명 반대 성명서 발표 및 투쟁일정 등을 논의함. 사회보험지부는 향후 투쟁일정을 공 개하지 않았으나 전면파업 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10월까지 노사는 교섭에 임했으나 교섭이 중단된 상태임. 노사간 주요쟁점은 다음과 같음.

【노<사> 주요 쟁점】 ▲임금 총액대비 10% 인상 <4.1%> ▲수용불가 <3급 직원에 대한 성과연봉제 실시(현행 2급 이상 성과연봉제 실시)>

- 11월 중순부터 노조(사회보험지부 조합원 등 100여 명)는 공단 현관 앞에서 이사 장 출근 저지를 위한 피케팅 시위를 하고 있음.
- 11월 17일, 사회보험지부와 직장노조는 임금인상, 연봉제 확대 반대 등을 주장하며 공동으로 간헐적 순환파업을 계속함. 그간 파업현황을 살펴보면 양 노조가 10월 31일, 11월 3일, 11월 8일, 11월 9일, 11월 15일, 11월 17일에 간헐적으로 하루일정의 파업에 돌입하고 있음. 또한 이후에도 파업 일정에 따라 지역별로 파업에 순차적으로 돌입할 예정임.

○ 주요 분규사업장 등

■ 한국철도공사

- 11월 7일 노사는 2011년 임금 등에 대한 노사간 잠정합의에 이름. 11월 10일, 전국철도노동조합 확대쟁의대책위원회는 2011년 임금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함. 66.7%로 잠정합의안이 가결됨. 11월 15일, 노사는 2011년 임금협약 조

인식을 개최함. 잠정합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주요 내용】

<임금협약>

- ▲임금 총액대비 4.1% 인상(호봉승급분 별도)
- ▲'09. 5월 이후 입사자 임금은 단계적으로 조정 등
- <철도 안전확보 관련>
 - ▲ 1/4분기 및 3/4분기 정기 중앙노사협의회를 '철도안전특별협의회'로 운영
 - ▲세부사항은 분야(영업 운전 차량 시설 전기)별 T/F 운영 등

■ 발전노조

- 발전 5개사는 11월 3일부터 15일까지 2009년 노조의 공기업선진화 반대 파업 관련으로 총 29명(전 수석부위원장 등)에 대한 징계결과를 통보함.
 - ※ 징계현황: ▲사유: '09년 불법파업(11.2~11.6, 11.18~11.26)으로 인한 기업질서 문란 및 폭력행위 등 ▲징계인원(29명): 해임 2명, 정직 8명, 감봉 1명, 견책 18명
- 11월 15일, 노사는 2009∼2011년 임금 등 10차 교섭을 실시하였으나 진전 없이 종 료함. 노사간 주요쟁점은 다음과 같음.

【노<사> 주요 쟁점】

- <임금> ▲'11년: 총액대비 8.4% 인상 <4.1%> ▲'09년 •'10년: 동결(단, '09년 이후 대 졸신입 초임삭감 원상회복시) <동결>
- <제도개선>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기준: 현행유지 <변경(당해 연도→전년도 기준임 금)>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장려금 포함 <제외> 등

■ 경북대병원

- 11월 8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임단협 관련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노조 측의 조정안 거부로 조정이 불성립함. 9일부터 노조는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면 파업에 돌입하였는데, 필수유지인원은 유지함.
- 11월 11일, 노사 대표는 3차례 면담을 통해 의견을 나누었으나 진전 없이 종료함. 11월 14일, 노사는 14~15차 본교섭을 진행하였음에도 상호 입장 고수로 교섭이 종료됨. 노사간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음.

【노<사> 주요 쟁점】

- ▲임금 총액대비 7.3% 인상 <4.1% 인상> ▲직종별 부족인력 충원 <검토> ▲무기계 약직 채용 즉시 정규직화 <1년 후 정규직화 검토> ▲4명에 대한 고소 취하 <수용불가> 등
- 그러나 11월 15일, 2011년 임단협 잠정합의에 이름. 이날 노조는 파업중단을 결정

하고 업무에 복귀함. 잠정합의 주요내용은 기본급은 2011년 공무원 봉급표 준용 (총액대비 4.1% 인상), 대민지원수당 연 20만원 인상, 진료지원수당 월 3~5만원 인상, 계약직 발령 후 만 1년 되는 시점에 정규직으로 임용, 생후 만 6년(2008.1.1 이후 출생자) 이하 자녀 육아휴직 신청시 부여, 칠곡병원 간호부 교대근무에 대해 현장의견 수렴 후 추후 논의 등임.

■ 원광대학병원

- 11월 15일, 노조는 병원 1층 로비에서 파업전야제를 개최함. 그러나 원광대병원 노사는 이날, 2011년 임금 관련 조정회의에서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 안을 수락하면서 노동쟁의가 일단락됨. 조정안의 내용으로는 임금 총액대비 2.87% 인상(2011.3.1부터 적용)이 주요함(노조는 총액대비 9.55% 인상안을 제시한 바 있음). 11월 16일에 예정된 파업은 철회함.

■ 오리엔트정공

- 오리엔트정공은 경북 경주시 소재 자동차부품제조업체임. 노조는 민주노총 금속 노조에 가입되어 있음. 사측은 지난 10월, 매출감소 및 당기순손실의 증가를 이유 로 정리해고를 단행함. 한편, 4월부터 노사간 교섭이 진행되고 있었고, 10월 28일 까지 임금 및 현안문제에 대한 교섭이 진행되었음.
- 11월 현재까지 해고 예정 조합원은 19명임. 11월 중 노조는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 하며 집회를 개최 중에 있음.

■ 외화은행

- 11월 8일, 노조는 2011년 임시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외환카드노조와 합병결의, 지부운영규정 개정, 희생자 구제기금 모금 등을 의결함. 또한 이날 노조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하나금융 특혜승인 즉각 중단, 론스타 지분에 대한 징벌적 매각명령즉각 발동, 전 조합원은 독자생존 및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모든 활동에 동참, 전조합원은 노조를 중심으로 일치 단결 등의 사항을 결의하였음.8)
- 11월 18일,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에 대해 외환은행 보유지분 51.02% 중 초과보유지분 41.02%에 대한 조건 없는 매각명령을 결정함. 그러나 노조는 금융위원회 앞에서 론스타에 대한 징벌적 매각명령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함.
- 11월 21일, 노조는 론스타에 대한 징벌적 매각명령 촉구를 위한 릴레이연차투쟁을 종료함.

⁸⁾ 한편 외환은행 노조는 2011년 3월 노사간 2010년 임단협을 합의한 바 있으며, 3월 2011년 임단협 요구안을 제출하였고 같은 달 파업 찬반투표를 가결한 바 있음.

◈ 노동계 동향

- 양대 노총, 「'12년도 공공부문 노동자 실질임금 보장촉구」 기자회견 개최
 - 11월 11일, 양대 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내년도 공공기관의 임금을 호봉 승급분 등 자연증가분을 포함하여 총 인건비 기준으로 3.9% 수준 인상 등을 제시 할 것에 대해 이는 삭감된 실질임금을 더 하락시키는 수준이며 공무원과도 임금 인상율의 차이가 있다고 주장함. 또한 신입직원 임금삭감 정상화 등 각종 독소조 항이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함.
 - 이에 공무원 임금 인상률 이상의 인상안 제시, 신입직원 임금정상화에 소요되는 재원 보장, 저임금 공공기관에 대한 차별개선 방안 마련, 법정수당 지급 보장 등 임금제도 개선 등을 요구함.
- 한국노총,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활동 중단 선언
 - 한국노총은 지난 11월 4일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활동 중단을 선언함. 이날 활동 중단에 따른 성명서를 발표하였음.
 - 성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한국노총은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가 사내하 도급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관한 노사 의견을 1회 제출받은 이후 구체적 내용에 대한 노사간 토론이나 현장 실태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공익 위원들만의 비공개 밀실논의가 진행되었고, 이상한 형태의 공익안을 내놓기에 이 르렀다'고 주장함.
 - 또한 동 위원회에서 '비정규직 차별개선 대책'을 논의하는 도중에 당정 협의를 진행하여 지난 9월 9일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였고, 10월 7일에는 한나라당 의원입법안에 '상용형 파견의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기간 제한 없이 파견근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파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고 하면서 동 위원회에 대해, '노사정위원회를 정부정책의 들러리로 세우고 있는 정부의 기만적인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활동 중단을 공식 선언'한다고 발표함.
- 한국노총, 청년유니온과 업무협약 체결
 - 11월 4일, 한국노총은 홈페이지를 통해 부설기관인 중앙법률원이 청년유니온과 향후 1년간 청년노동자들의 권리보장과 인권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였 다고 밝힘. 중앙법률원은 청년유니온 및 조합원들을 위한 법률구조, 교육활동 등을 수행하며, 청년유니온은 이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함.

- 민주노총, 퀵서비스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방안을 다시 마련할 것을 요구
 - 11월 4일,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퀵서비스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방안'
 에 대해 업종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산재보험 적용방안을 다시 마련하라는 성명을 발표함.
 - 이 성명에서 민주노총은 입법예고한 산재보험 적용방안이 적용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함. 특히 퀵서비스 근로자 중 1개 업체에 전속된 경우는 특수고용직 종사자 산재적용 방식으로 하겠다는 고용노동부의 방안은 전체 퀵서비스 종사자가 14.3%에 불과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용노동부의 주장대로 10만 명의 퀵서 비스 노동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함.

○ 민주노총, 2011년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 11월 13일, 민주노총은 '2011 전국노동자대회' 사전행사로 각 연맹별 사전집회를 개최하였고, 서울역 광장 등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등 19,000여 명이 참가함. 이날 서울광장에서 열린 "한미FTA저지! 1%에 맞선 99% 우리가 대안이다! 전태일 정신 계승! 2011 전국노동자대회"에는 약 21,000여명이 참가하였음.

○ 울산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현대차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촉구

- 11월 15일, 울산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21개)는 현대차 사내하청노동자 정규직화를 요구하면서 파업한 지 1년이 되는 이날에 맞춰,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남은 것은 104명 해고, 1,092명 징계, 187명 고소·고발, 200억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라고 하면서 '현대차 문용문 지부장의 차별 없는 현장, 비정규직 없는 현대차 만들기 운동을 적극 지지하며 구체적인 연대'를 할 것임을 천명함.

○ 기타 동향

- 11월 8일, 쌍용자동차 재직근로자 윤 아무개 씨가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안성휴게소 뒤편 야산에서 목을 맨 채로 발견됨(자살로 추정). 망인은 1990년 쌍용자동차에 입사하여 프레스생산팀 프레스생산과에서 근무했음. 조합원이었으나 2009년 공장점거파업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함.
- 지난 11월 4일 현대차 지부는 임원선거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문용문 후보조가 당선함(51.52% 득표). 이날 투표에서는 재적조합원 45,129명 중 40,294명 투표하여 (투표율 89.29%), 문용문 후보조가 20,760표(51.52%)를 득표하여 19,379표(48.09%)를 득표한 이경훈 후보조를 누르고 당선함. 문용문 신임 지부장은 근로시간면제제도 원상회복,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현대ㆍ기아차 임단협 공동협상, 전 공장의발암물질 전면조사, 상여금 800% 지급 명문화, 60세까지 정년 연장 및 퇴직금 누진제 실시, 2012년 주간연속 2교대제 전면실시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음.

- 기아자동차 지부는 지난 10월 18일 예정된 지부장 결선투표를 잠정 중단하는 결정을 내림. 이는 지부장 후보인 박홍귀 씨가 투표 전반에 대한 불신과 대리투표 의혹 등을 제기하며 판매지회 전체 검표를 요청한 것에 따른 것임.
 - 그러나 10월 18일 5개 지회 임원선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10월 19일 개표를 완료하였음. 10월 20일, 지부 선관위와 4개 지부장 후보 선거대책본부 관계자 등은 지부장 선거시 판매지회의 대리투표 의혹 관련 회의를 개최하여 의심부분 조사결과에 따라 전체조합원 재투표 또는 결선투표를 진행하기로 결정함.
 - 한편, 박홍귀 후보는 노조 선관위원장을 상대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증거보 전신청을 하였고, 선관위원장 등 4명을 업무방해로 고소한 상황임. 그러나 11 월 4일 노조는 22대 임원 당선확정을 공고함.

◈ 경영계 동향

- 경총, 『2011년 임금조정 실태조사』 결과 발표
 - 11월 16일, 경총은 『2011년 임금조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음. 이 조사는 전국 100인 이상 764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음. 이 실태조사에서는 올해임금협상에 따른 타결 임금인상률은 5.4%, 4년제 대졸 신입사원의 초임은 월 242만 2천 원으로 나타난 것으로 발표함.9
 - 4년제 대졸 초임을 살펴보면 1,000인 이상 대기업의 대졸 초임이 271만 6천 원으로 가장 높음. 100~299인 중소기업의 평균 대졸 초임 212만 6천 원에 비해 월 59만 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산업별로는 금융 및 보험업의 초임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들 업계의 평균 대졸 초임은 292만 9천 원으로 제조업 평균 초임(242만 4천 원)에 비해 50만 5천 원, 건설업(236만 1천 원)에 비해 56만 8천 원더 높게 나타났다고 함.
 - 2007년(5.1%) 이후 가장 높은 5.4%의 타결 임금인상률을 나타낸 것은 올해 초반 까지 경기회복세가 이어진 데다, 물가상승 등에 따른 임금인상 요구가 강해진 것을 주요인으로 지적함. 또한 투쟁 위주의 노동운동이 실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된 것도 상당 부분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함.
 - 특히 임금협상이 타결된 기업 중 65.6%는 전년에 비해 협상이 일찍 타결되었다고 응답하였는데, 빠른 임금협상 타결의 가장 큰 요인으로 '노사의 긍정적 협상 태

⁹⁾ 이 실태조사에 따르면 5.4% 인상은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인데, 이는 올해 상반기까지 경기회 복세에 대한 기대가 지속되었고, 이후 물가 상승에 따른 근로자들의 생계비 보장 요구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함.

도'(44.5%), '(근로자의) 경영환경에 대한 이해'(25.1%) 등을 꼽고 있음.10)

또한 2011년 7월 시행된 복수노조제도로 인해 임금협상에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한 기업은 16.2%로 조사됨. 조사대상 전체 기업 중 9.8%는 복수노조로 인해 임금협상이 빨리 타결되었다고 응답한 반면, 6.4%는 임금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다고응답한.11)

◈ 정부, 국회 등 동향

- 민주당 홍영표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 지난 11월 17일, 민주당 홍영표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정리해고 요건의 객관성을 강화시키고, 사용자는 해고회피에 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며, 정부 및 고용주차원에서도 정리해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전직지원 및 우선 재고용 등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함.
 - 법안의 주요 내용은 정리해고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해고에 대한 행정통제 강화, 해고자에 대한 전직지원계획 및 고용유지계획, 정리해고에 관한 단체협약의 활성화 등을 통해 종합적 정리해고 제도를 구축하는 것 등임. 특히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사유를 강화하고, 그 해고 요건 및 협의절차 등을 단체협약 등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용자에게 해고 협의시 정리해고 제안이유, 해고자 선정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근로자대표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 등이법률안의 주요 내용임. 또한 사용자는 일정 규모 이상 근로자 해고신고시 해고회피계획 및 전직지원계획 등을 작성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되 고용노동부 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승인하도록 함.
- 고용노동부, 완성차업체 근로시간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고용노동부는 현대, 기아, 한국GM, 르노삼성, 쌍용 등 국내 완성차업체의 전체 공장을 대상으로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14일까지 3주간에 걸쳐 근로시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함. 2011년 1월 1일부터 점검일까지 가동률이 높은 2개월 및 9월(현월)을 대상으로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 위반 실태 및 조사기간

¹⁰⁾ 임금타결을 위한 노사 협상기간과 협상횟수도 감소하였는데, 올해 임금인상 결정을 위한 노사의 협상 횟수는 평균 5.3회, 기간은 1.8개월이 소요됨. 이는 전년의 6.1회, 2.2개월에 비해 상당히 감소 한 수치라는 것이 경총의 해석임.

¹¹⁾ 이는 협상 속도가 빨라진 기업은 복수노조 설립을 우려하여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임금협상을 타 결하기 위해 속도를 올린 반면, 늦어진 기업은 복수노조 설립 이후 교섭창구 단일화 분쟁 등으로 인해 임금협상이 타결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함.

- 동안 매월의 공장별 · 공종별 주중 근로시간 및 휴일특근 실태를 일제히 조사함.
-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들 완성차업체의 주중 연장근로 시간(식사시간 및 작업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연장근로시간)은 업체별로 최소 3시간 20분에서 최대 10 시간 50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주중 연장근로 외에도 휴일특근이 빈번 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대차, 기아차 및 한국GM은 평균적으로 주 1회, 르노삼 성차는 2주 1회 휴일특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장근로와 휴일특근(주 1회)을 합해보면 우리나라 완성차업체 근로자들은 주당 평균 55시간 이상 일하고 있음. 이는 2011년 8월 현재 전체 상용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인 41.7시간에 비해 15시간 이상 긴 수준이라고 발표함.
- 이번 실태조사 과정에서 전 업체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함. 연장근로 한도 위반은 주로 조기출근(30분~1시간), 식사시간 중 근로(1시간 중 30분), 야간조 조기 투입, 주 2회 휴일특근 등의 형태로 추가 연장근로를 함으로써 발생하였음.
- 고용노동부는 각 업체에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시정하도록 개선계획서 제출을 요구한 상태이며, 이번과 같은 실태점검을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동일한 법 위반이 적발되면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힘.12)

○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

- 11월 14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부산 사하구 장림동 소재 세탁업체 ○○산업사 대표 김 아무개 씨(59세)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구속함. 김 씨는 근로자 48 명의 임금 및 퇴직금 305백만 원을 체불하고, 9월 4일 잠적했다가 구인용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11월 14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출석함.
- 김 씨는 공장건물과 대지를 동생 명의로 이전하고, 회사 차량을 처 명의로 변경하여 처분하였으며, 미수채권 109백만 원을 처에게 양도하고 사업을 폐업하는 등 재산을 은닉하고,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고의적으로 체불한 점 등에 비추어 청산 의 지가 전혀 없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 발부한 상태임.
- 올해 11월까지 임금체불 사업주의 구속자 수가 11명에 이르고 있음. 2010년 이전 까지는 임금체불 사업주의 구속자 수가 매년 2~3명에 불과했으나, 2010년 11명, 올해는 11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됨. 【【■】

(김가람, 노동정책분석실 연구원)

¹²⁾ 자세한 것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참조(http://www.moel.go.kr/).